

### 경운대학교 시간강사위촉에관한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시간강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①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
- 1.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
- 2.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자로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강의 1년 이상 유경험자
- 3.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1년 이상 수료자

② 전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장이 추천사유를 참작하여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.

- 1. 사계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일 때
- 2. 행정기관,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
- 3. 교과목의 성질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기 어려울 때
- 4. 실기강사로서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
- 5. 특별강사로서 「학칙」 제20조 제4항의 현장형이론교육(IAC-IFC) 운영을 위해 현장실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국책사업의 목적성 있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인정된 자

제3조(위촉절차) ① 시간강사 위촉은 전공과정의 경우 학부(과)회의를 거쳐 학부(과)장이 추천하거나 교육운영공동체(2WINNER) 실행위원회 추천으로 교무처장이 내신하고, 교양과정 및 교직과정은 교과목 주관부서장의 추천으로 교무처장이 내신하고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.

② 신규시간강사 위촉을 위한 추천은 추천자가 시간강사 추천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간강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위촉하지 아니한다.

- 1. 전 학기의 출강률이 3분의 2에 미달한 때
- 2. 전 학기 강의평가 결과가 3.0 미만이거나 하위 10%교원에 연속 2회에 해당될 때
- 3. 전 학기 수업관리 미준수 사항으로 경고장을 받은 경우

④ 연속하여 강의가 있는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강사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위촉 할 수 있다. 단, 1년 동안 강의가 없는 시간강사의 경우는 시간강사 추천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천순위) 추천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시간강사의 위촉을 추천할 때는 다음 순위에 따라야 한다.

- 1.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
- 2.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
- 3. 과거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사임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4.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
- 5.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졸업하고 1년 이상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을 가지고 연구업적을 공개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
- 6.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고 연구업적을 공개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

제5조(강의시간의 제한) ① 시간강사는 동일인이 주당 9학점을 초과 담당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초과하여 담당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호의 경우 강의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- 1. 수업기간·출결관리·휴보강 등 수업관리 미준수 사항이 있는 경우
- 2. 강의평가 결과가 3.0미만이거나 하위 10%교원에 해당되는 경우
- 3. 기타 중대한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

제6조(위촉시기) ① 시간강사는 담당과목이 개강될 1개월전까지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개강일로부터 10일전까지 강사 선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직권으로 강사를 위촉하거나 개설된 강좌를 폐강 조치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